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14336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영

변론 종결2021. 6. 1.

판결 선고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D의 '울산공장 재배치 PROJECT(U2) 공사' 중 '건축구조 및 보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9. 4. 24. 피고 B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2019. 5. 21.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구조설계안 변경으로 인한 납기 및 공사대금(추가공사포함) 지급조건 변경'을 사유로 아래 내용의 각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2019. 9. 5.자 계약변경합의서

1	추가공사금액		추후 정산 처리 후 금액 결정
2	대금지급조건	선급금:30.00%(₩118,200,000)잔금:70.00%(₩275,800,000)	일금 ₩20,000,000
3	인도조건	가. 납품 및 설치: 2019년 8월 15.일까지 완료한다.	가. 1차납품 설치: 2019년 8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중도금 45.70% 지급/2019.09.10.)나. 2차 납품설치: 2019년 9월 20.일까지 완료한다. (잔금 24.3% 지급, 추가공사비 100%지급)

2) 2019. 9. 11.자 계약변경합의서(다만 아래에서 "E" 또는 "주)E"는 피고 C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	추가공사금액		추후 정산 처리 후 금액결정
2	대금지급조건	선급금:30.00%(₩118,200,000)잔금:70.00%(₩275,800,000)	선급금: 30.00%(₩118,200,000)중도금: 45.70%(₩180,058,000)잔금: 24.30%(₩95,742,000)추가공사금액: 추후 정산 금액
3	인도조건	가. 납품 및 설치: 2019년 8월 15.일까지 완료한다.	가. 1차납품 설치: 2019년 8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중도금 45.70% 지급/2019.09.10.)나. 2차 납품설치. 2019년 9월 20.일까지 완료한다.(잔금 24.3%, 추가공사금액)나-1.지급일-잔여분1차: (주)E에서 중도금 10%지급일-잔여분2차: (주)E에서 잔금 10% 지급일※위 사항은 (주)E 지급조건과 동일함.
4	추가 공사 금액은 금액확정용 E에서 추가공사금액 지급 하는날 기상으로		

다. 피고 B은 2019. 11. 21. 피고 C F 대리, G 차장을 각 수신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상 추가공사금액 사실 청구 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를 위반하여 물량증감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증가분 300,507,450원을 추가공사금액으로 청구하고 F, G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2. 2. 피고 B에 '정당한 계약 변경의 사유가 없고, 추가 공사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제1,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1) "을"(피고 C)은 최종 납품 검사 완료 전까지 "갑" (피고 B)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 물량의 증감 또는 사양 및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나 "갑"은 "을"의 현장 기술 감독관으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고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즉시 서면 확인서 및 변경 내역을 첨부하여 "을"의 계약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전기 1항으로 인한 계약액의 증감액과 납기의 변동을 "을"의 변경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을나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추가공사물량[주로 호이스트 서포트(Hoist support) 추가 설치와 관련된 에이치 빔(H-BEAM) 물량이고, 아래에서 보는 가설물 비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시공물량'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공사금액이 결정되지 않아 2019. 8. 20.경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 C측 F, 피고 B측 H, 원고측 I가 각 회사를 대표하여 공사 완료 후 추가시공물량을 확인하여 기존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9. 9. 11.자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9. 9. 18.경 추가시공을 완료하였다.

2) 원고가 구하는 추가공사대금에는 추가시공물량 외에 아래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가설물 설치비 3,678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는 바람에 공사를 할 수 없어 원고가 2019. 7. 18.경 공사철수 및 공기지연을 통지하자, 피고 C측 F, 피고 B측 J, K, H, 원고측 I, L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피고들이 지장물 철거를 약속하였다.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원고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물(비계)을 설치하여 공사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하되 공사 완료 후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가 2019. 9. 23. 피고 B 및 2019. 9. 27. 피고 C의 F에게 각 이메일로 정산검사원을 송부하여 이들이 추가공사를 확인한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피고 B은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원고와 피고 C의 F 사이에 구두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면 피고 C이 그 대금을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원고가 추가공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C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피고 B은 갑 제6호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하여 2019. 11. 21. 피고 C에 원고 주장 추가공사비 8,760만 원과 피고 B 직영 토목공사 중 추가 부분을 더한 30,507,4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지장물 철거를 약속하거나 가설물 비용 부담을 약속한 적도 없다[피고 B은 피고 C이 지장물을 제거해주기로 하였는데 철거하지 않았고, 피고 C의 F이 원고에게 직접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F이 원고측 L, 피고 B M, H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추가공사비용을 책임지고 피고 C로부터 받아준다'고 약속하였다가 이후 말을 바꾸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1. 3. 29.자 준비서면)].

다. 피고 C

1)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변경합의서 역시 피고 B과 체결한바,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 C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피고 C은 원고와 직접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F이 그러한 합의를 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부분 도급금액 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 B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은 기존 페인트 생산라인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 설비 등이 간섭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일부 설비를 이설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설계획이 있는 설비의 경우 피고 B이 간섭이 없는 구간에서 우선 작업을 하고 이설계획이 없는 설비의 경우 간섭을 피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구매사양서 포함)상 모든 작업공정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수주업체에서 준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비계를 사용한 작업을 하더라도 이는 위 도급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이 '구조설계안 변경으로 인한 납기 및 공사대금(추가공사포함) 지급조건 변경'을 사유로 각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변경합의서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추후 정산처리 후 금액결정'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계약변경합의서에 추가공사의 내용이나 규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B이 원고의 추가공사(추가시공물량)를 부인하고 가설물 비용 부담 약속 사실 역시 부인하므로,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시공물량이 존재한다거나 ② 피고 B이 가설물 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추가시공물량의 존재 여부

1) 추가시공물량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갑 제3, 6 내지 9,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23. 추가시공물량 등에 관한 정산검사원을 작성하여 피고 B, 피고 C의 F에게 보낸 사실, 피고 B이 위 정산검사원 기재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한 3억 원을 자신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주장하면서 피고 C의 F, G에게 위 1.의 다.항에서 본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현장관리자였던 M, H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합의서"(위 정산검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검토하여 피고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 및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1)의 인정사실이나 거시 증거,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가시공물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갑 제3호증(정산검사원)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에 피고 B이나 피고 C이 관여한 바 없다.

나) 갑 제6, 15호증(각 내용증명우편)은 피고 B이 피고 C의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여기에서 피고 B이 원고 주장 금액을 포함하여 3억여 원을 자신의 피고 C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 추가시공물량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J의 태도에 비추어 위 3억여 원에 관한 위 각 내용증명우편 기재 피고 B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중 J, H의 진술 부분은 원고 직원과의 대화 중 맞장구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구체적 내용이 없고, 갑 제16, 17호증(H, M 진술서)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후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중 일부(갑 제16호증 중 183,178,525원을 원고가 추가공사한 금액으로 확인하는 부분)는 원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데다가 이들의 진술만으로 갑 제3호증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

라) F은 피고 B이 피고 C에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여 정확한 물량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 요청하여 공사내역(정산검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받아 보았을 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적 없고, 공사내역 확인 결과 원고가 증가된 물량으로 주장한 부분은 피고 C과 피고 B의 도급계약내역에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마)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그 직급 등에 비추어 피고 C을 대표하여 추가시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바) 주식회사 D는 발주 당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마이크로파일 수량이 증가한 반면 강판압착보강작업과 Hoist support를 포함한 H-BEAM 수량은 감소하였고(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물량 대부분은 H-BEAM에 관한 것이다), 증감을 반영한 공사대금은

당초 이 부분 도급금액인 5억 4,000만 원과 동일하여 피고 C에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 추가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 가설물 비용 부분

1) 이 부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나.항 1)에서 본 갑 제3, 6 내지 9, 15, 16, 17호증 외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가 있고, 이에 따르면 위 나.항 1)의 사실 및 원고가 2019. 7. 18. 피고 B에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위 통지 이후 원고가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물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같은 증거 및 위 나.항 2)에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1)의 인정사실이나 거시증거,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가설물 설치에 관하여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비용에 관한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나.항 2)의 인정사실 및 사정은 가설물 비용 부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시 피고 B을 배제한 채 피고 C측이 원고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갑 제5호증의 2, 제7항), 그와 같은 주장 내용은 피고 B이 이 사건에서 가설물에 관하여 하는 위 2.의 나.항 2)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 H, M의 각 진술서(갑 제16, 17호증) 기재 내용 역시 지장물 철거의 책임이 피고 C에 있고 가설물 비용도 피고 C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아닌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지장물 철거나 가설물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을 대표하여 F이 추가시공을 지시하였고, 추가시공물량에 대한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것에 위 F도 합의하였으며, 가설물 철거의 책임이 피고 C에 있고, 위 F이 가설물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 C에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C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통상 실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추가시공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은 2013. 10. 16.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31.부터 피고 C로 소속으로 변경되어 2018. 11. 1. 이 사건 공사현장 기계과에 배치되었고 그 직위는 '대리'인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현장소장은 N이고, 그 아래 기계과에는 F의 상급자로 G, O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추가시공물량에 관한 계약 체결을 결정하거나 가설물 비용 정산을 약속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오인 받을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역시 자신이 추가공사비 지급을 결정하거나 이를 약속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시공을 지시하거나 비용 정산에 합의한 적 없다고 진술한다.

5) 추가시공물량의 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의 지위 등에 비추어 설령 F이 추가시공물량이나 가설물 비용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F 개인이 위 정산 등에 조력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 C을 대표하여 원고와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에 '구매사양서'가 첨부된 사실 및 위 구매사양서에서 피고 B의 역무범위에 '설치관련 가시설 및 장비 설치'를 포함하는 한편 '제작에서 시운전까지 모든 작업공정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수주업체(피고 B)에서 준비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도급계약상 피고 C에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가설물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아